

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교양증진, 소질계발, 정서순화 등 전 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북도학생회관 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 2 조 (위치) 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79번지에 둔다.

제 3 조 (회관의 운영) 회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청소년문예활동의 공간 제공
2. 연극, 영화, 음악 등 공연장 운영
3. 도서관 운영
4. 청소년에 대한 교육·문화활동 전개
5.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4 조 (관장)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 한다.

제 5 조 (정원) 회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 6 조 (하부조직) 회관에 총무과, 운영과, 도서과를 두고,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,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, 도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 7 조 (총무과) 총무과에는 서무계, 관리계를 두며 과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관의 운영 및 기획
2. 관인관수, 문서관리 및 보안업무

3.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
4. 대관업무에 관한사항
5. 예산회계의 운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
6. 후생시설관리 및 운영
7. 회관보전, 조정, 정비
8. 회관시설물, 설비의 작동 및 관리
9. 차량운전 및 관리
10.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

제 8 조 (운영과) 운영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각종 행사의 기획
2. 청소년의 학술발표 개최
3. 연극·영화등을 위한 공연장과 강당등 운영
4. 청소년의 문예 및 교육활동 추진
5. 학생의 특별활동장으로서의 활용
6. 청소년의 여가선용장으로서의 활용
7. 전시실, 토의실, 음악실, 상담실, 회의실, 서예실 운영

제 9 조 (도서과) 도서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도서관운영에 대한 계획수립
2. 도서관자료의 수집, 정리, 분석, 보존, 축적
3.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
4. 시청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
5. 정보자료실 운영
6.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
7. 자료의 보수 및 제본에 관한 사항

제 10 조 (재정) 회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

상하며 기타보조금 등으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.

제 11 조 (휴관일) ① 회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1.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
2. 매월 4번째 주 수요일

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한 다음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운영시간 및 근무시간) ① 회관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와 회관사정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.

② 회관에서 복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.

제 13 조 (회관의 사용)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(별표 1)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회관내 도서관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.

1. 도서관사용자의 입·퇴관방법 및 절차
2.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
3.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도서

③ 기타 회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.

제 14 조 (사용대상) 회관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학생과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소속직원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근로청소년, 단체(기관) 및 일반인으로 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회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사용시간) ① 사용자는 (별표 2)에 의한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

다.

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한 매시간 마다 소정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사용료) 회관의 시설 및 설비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(별표 2)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사용료의 감면) ① 다음 각호의 경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
2. 회관의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등과 기관의 행사
3. 관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기관 또는 단체)
4. 기타, 교육적차원에서 권장할만한 행사

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율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.

제 18 조 (사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
2. 인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

제 19 조 (사용자의 책임)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 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회관 사용의 제한) ① 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(기관 또는 단체)에 대하여는 회관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
1. 실내 풍기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
3. 정신병자

4.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
5. 교육에 방해되는 공연물을 공연할 때
6. 기타 회관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② 관장은 회관사용자가 사용자준수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제 21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타기관의 통합)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은 학생회관에 흡수 통합된다.
- ③ (권리 의무의 승계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충청북도학생도서관장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학생회관장이 이를 승계한다.
- ④ (기관통합에 따른 소속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승계) 이 조례 시행당시의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의 업무 및 소속공무원은 학생회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.

(별표 1)

학 생 회 관 사 용 신 청 서

주 소:

직 업 (기관 또는 단체):

성 명 (기관장 또는 대표자명):

전화번호:

학생회관 조례와 규칙을 준수키로 하고 회관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 용 목 적			
참 가 범 위	(인원: 명)		
사 용 대 상			
사 용 기 간	년 월 일	시부터(일간)	
	년 월 일	시부터(일간)	
특 별 설 비			
사 용 료 납 부 방 법			
입 관 료 징 수 유 무	무	유	원
사 용 료	원		

(별표 2)

학 생 회 관 사 용 료

(단위: 원)

사용구분	사용목적	기 준	금 액	비 고
강 당 동	공연 및 문예행사	1 회 (4시간 이내)	30,000	
	체육활동	〃	10,000	
	집 회	〃	20,000	
전 시 실 (내 부)	전시, 선전, 홍보, 계몽	1 일	10,000	4월 - 10월 (09:00-20:00) 11월 - 3월 (09:00-18:00)
전 시 실 (외 부)	〃	〃	8,000	※ 관장이 허가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※ 외부전시실은 증별사용료임
특별활동실	음악, 서예 등	1 회 (4시간 이내)	10,000	※ 각 실당 사용료 임
소 극 장	연극공연 영화상영 기타행사	1 회 (4시간 이내)	20,000	
부 속 설 비	피아노	1 회 (4시간 이내)	5,000	
	프로젝터	〃	20,000	
	냉·난방시설		시중시가에 의해 징수	
	조명시설		시중시가에 의해 징수	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1991. 3. 8. 법률 제4347호)

제 41 조 (교육기관의 설치)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고 육 부

교행 01210-355

(720-3316)

1991. 9. 6.

수신 충청북도교육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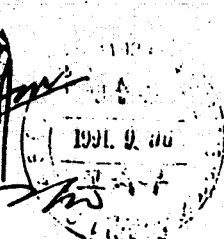
제목 교육기관 설치 승인

1. 사희01210-647('91.8.14)오로 제출한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승인 신청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승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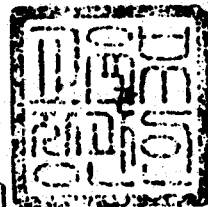
2. 아울러 학생회관의 계관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내부설비 확충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충청북도학생회관 설치 승인서 1부. "끝"

선 결 유 감		결 지 공 함	중 등 교 각 지 장
접수일시	1991. 9. 6	번호	2635
처리과	사회교육계장		사회교육계장



고 육 부 장



충청북도교육국장진결

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승인서

구 분	승 인 내 용
○ 목 적	○ 청소년들의 교양증진, 소질개발, 정서순화등 선인 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안락채를 육성하고자 함
○ 명 칭	○ 충청북도 학생회관
○ 위 치	○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79번지
○ 시설규모	○ 부 지 : 3,240㎡ ○ 연건평 : 4,724㎡(지하1층, 지상5층)
○ 투 자 액	○ 총 1,968,000천원 국 고 : 550,000천원 지 체 : 1,418,000천원
○ 개관예정	○ '92년 1월경

충청북도교육위원회

우편번호 360-160 / 주소 청주 산남 4-11 / 전화 272-0414(0431) / 전송 66-8927

문서번호 : 의사 01601-58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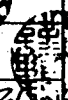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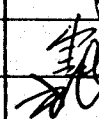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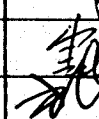
시행일자 : 1991. 11. 5.


(경 유)

수 신 : 충청북도교육감

참 조 : 행정관리담당관

제 목 : 의안 이송

선결	교육감		지		
집	일자	A.11.5	시		
수	번호	202	결	부교육감	
처	리	행정관리담당관	재	관리국장	
담	당		공	행정지원관	
자			람	행정관리담당관	

법무계장 

행관 01213-55(91.10.21)호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이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이송합니다.

조	태	안	의	결	내	용	비	고
제1호	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	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	원	안	의	결	91.11.1.	의결
제2호	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	한조례안	수	정	의	결	.	.
제3호	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	조례증개정조례안	원	안	의	결	.	.
제4호	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증개정조	례안	원	안	의	결	.	.
제5호	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	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	원	안	의	결	.	.

- 첨 부 : 1.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1부.
 2.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1부.